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79
----------	------

제출년월일 : 2010. 9. .

제 출 자 : 충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릉공영주차장 인근은 전통시장의 인접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평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요금 징수 등을 이유로 이용을 기피
-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을 무료개방 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인근의 불법주차 해소는 물론, 상가 이용객에게는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칠금동 부영2차(아) 일원에는 터미널,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극심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칠금공영주차장을 유료화(2급지 적용)하여 효율적 관리
-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경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주차편의 제공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안 제3조제4항제9호)
 - 5·18민주유공자 자가운전 차량 및 5·18민주유공자 동승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 교현천, 충의, 금릉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및 칠금공영주차장 유료운영(안 별표 1비고의 제4호나목)
-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2제6호)
 - 현행 :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 개정 : 원룸형 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기숙사형 주택 삭제(2010. 7. 6)]

3. 근거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5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4. 입법예고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5. 기타참고자료 : 없음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을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로 하고 "당해 "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및 5·18민주유공자 동승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조의 2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 [별표 2] "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청, 구정, 추석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무료운영할 수 있다.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별표 1 비고의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유료운영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1급지 : 충주천공영주차장

2급지 : 칠금공영주차장

별표 2 중 제6호 도시형 생활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 1]</u> 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당해</u>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단, 동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p> <p>1. ~ 8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 신 설 ></p> <p>⑤ ~ ⑥ (생략)</p>	<p>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 1</u>----- ----- ----- <u>해당</u>-----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 ----- 1. ~ 8 (현행과 같음)</p> <p>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자가운전차량 및 5·18민주유공자 동승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p> <p>1. ~ 5. (생략)</p>	<p>제4조(주차거부금지)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 2(공영주차장의 운영) ①시에서 <u>직영하는 노외공영주차장은 충주천공영주차장,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룡공영주차장으로 한다.</u></p> <p>②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3.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로 한다.</p> <p>4. 급지구분 가. (생략) 나. 노외주차장의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지 : 충주천공영주차장 2급지 : 교현천공영주차장, 충의공영주차장, 금룡공영주차장</p> <p>5. (생략)</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p>	<p>3.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 신청, 구정, 추석연휴기간은 무료운영하며, 기타 공적인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에는 무료운영할 수 있다.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로 한다.</p> <p>4. ----- 가. (현행과 같음) 나. 유료운영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1급지 : 충주천공영주차장 2급지 : 칠금공영주차장</p> <p>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위탁시설</td> <td>(생략)</td> </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td> <td>(생략)</td> </tr> <tr> <td>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 <td>(생략)</td> </tr> <tr> <td>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td> <td>(생략)</td> </tr> <tr> <td>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 <td>(생략)</td> </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생략)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생략)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생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물</th> <th>설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 위탁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현행과 같음)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현행과 같음)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생략)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생략)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생략)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생략)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생략)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현행과 같음)																								
3.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6.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생략)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현행과 같음)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생략)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현행과 같음)
9. 창고시설	(생략)	9. 창고시설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건축물	(생략)	10. 그 밖의 건축물	(현행과 같음)
비고 1. ~ 14. (생략)		비고 1. ~ 1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차장법」

제14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제15조 (관리방법) ①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대수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가.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이 정차하는 역 또는 정거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밀집한 지역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지역으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 밀집한 지역
 - 바. 그 밖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② ~ ⑧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32조의 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충주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 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 월 이전 이내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 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p>